

스포츠산업과

민원사무목록

연번	처리부서	민원사무명	처리일수
1	스포츠산업과	체육시설업 신고(변경신고)	민원에 따라 다름 (7일/5일)
2	스포츠산업과	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	즉시
3	스포츠산업과	체육시설업 휴업(폐업) 통보	즉시

체육시설업 신고(변경신고)

1. 사무안내

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2. 신청대상자 : 요트장업, 조정장업, 카누장업, 빙상장업, 승마장업, 종합체육시설업, 수영장업, 체육도장업, 골프 연습장업, 체력단련장업, 당구장업, 썰매장업, 무도학원업, 무도장업, 야구장업, 가상체험 체육시설업, 체육교습업, 인공암벽장업

3. 신청방법 : 방문

4. 관련법규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1조

5. 수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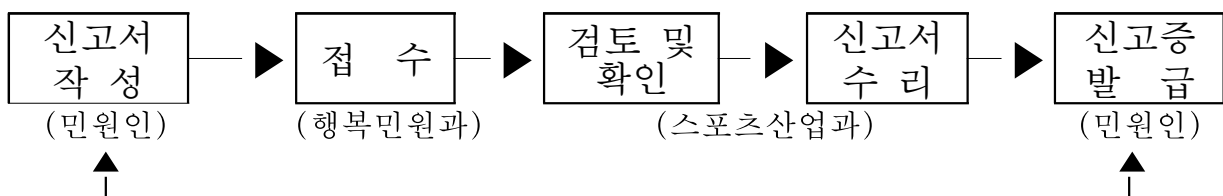
- 체육시설업 신고 : 30,000원
-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: 10,000원

6. 구비서류 :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시설 및 설비개요서,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서 사본, 신청서,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(변경 신고 시)

7. 처리기간 및 제출처

제출처	처리기간	처리부서	경유·협의부서	비고
장흥군	신고-7일 변경-5일	스포츠산업과	-	

8. 민원처리 흐름도



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21. 6. 9.>

체육시설업 신고(변경신고)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신 고: 7일
			변경신고: 5일
신고인	①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영업소	상호		
	주소	전화번호	
	②종류		
	③규모		
체육지도자	성명	자격종류 및 자격번호	
	주소		
④변경신고 사항	신고번호	신고일	
	제 호	년	월 일
	변경 전	변경 후	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장흥군수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1부 2.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) 1부 4.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					수수료 특별자치시·특별 자치도·시·군· 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				
	공부(公簿)확인	확인날짜	확인 결과	확인자	비고	
	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	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관련법규

○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

<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>

-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. 요트장업 | 7. 수영장업 | 13. 무도학원업 |
| 2. 조정장업 | 8. 체육도장업 | 14. 무도장업 |
| 3. 카누장업 | 9. 골프 연습장업 | 15. 야구장업 |
| 4. 빙상장업 | 10. 체력단련장업 | 16.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|
| 5. 승마장업 | 11. 당구장업 | 17. 체육교습업 |
| 6. 종합 체육시설업 | 12. 썰매장업 | 18. 인공암벽장업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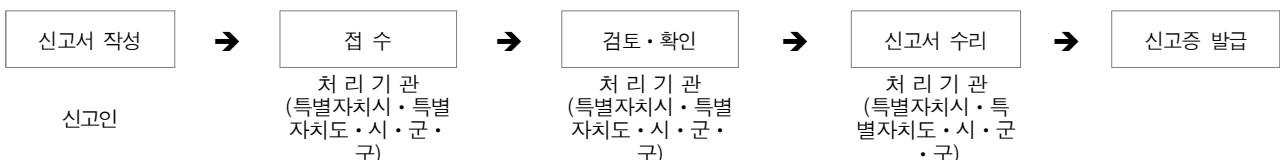
작성요령

-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·변경신고를 하려는 자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)의 성명을 적습니다.
- ②란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습니다.
다만, 체육도장업, 가상체험 체육시설업, 체육교습업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운동 종목을 명시합니다. 예시) 체육교습업(축구)
-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. 다만, 체육교습업은 동시 최대 교습인원을 적고, 실외 인공암벽장업은 시설 설치면적(사업장 바닥면적)을 적습니다.
-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.

유의사항

-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2항제1호)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제3호).
-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(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제4호).
-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,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

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

1. 사무안내

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2. 신청대상자 : 신고된 체육시설업의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

3. 신청방법 : 방 문

4. 관련법규

○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1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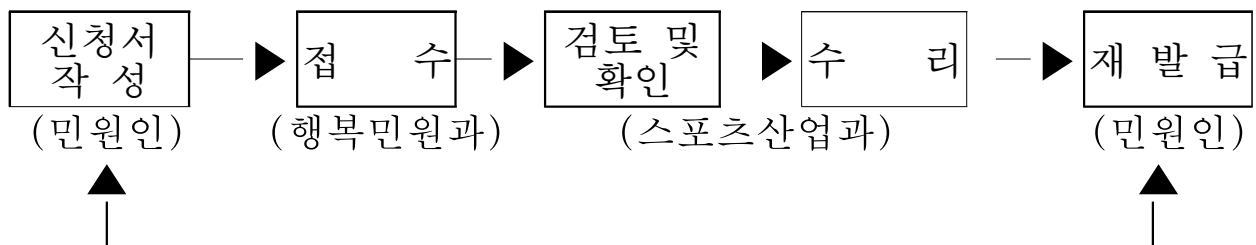
5. 수 수 료 : 없음.

6. 구비서류 :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(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)

7. 처리기간 및 제출처

제 출 처	처리기간	처리부서	경유·협의부서	비 고
장흥군	즉시	스포츠산업과	-	

8. 민원처리 흐름도



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① 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영업소	상호	전화번호		
	소재지			
	② 업종			
신고번호		신고일자		
		년 월 일		

③ 재발급 사유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1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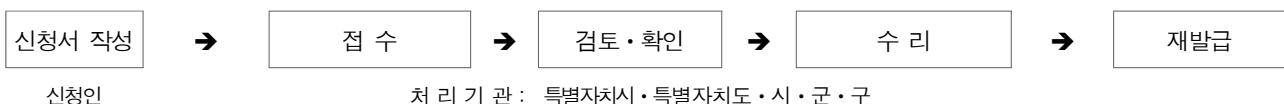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첨부서류	수수료
신고증명서(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됩니다)	없음

작성요령

- ①란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(법인의 경우 대표자)의 성명을 적으십시오.
- ②란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.
- ③란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유(분실·훼손 등)를 간단히 적으십시오.

처리절차



체육시설업 휴업(폐업) 통보

1. 사무안내

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.

2. 신청대상자 : 신고된 체육시설업 중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

3. 신청방법 : 방 문

4. 관련법규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6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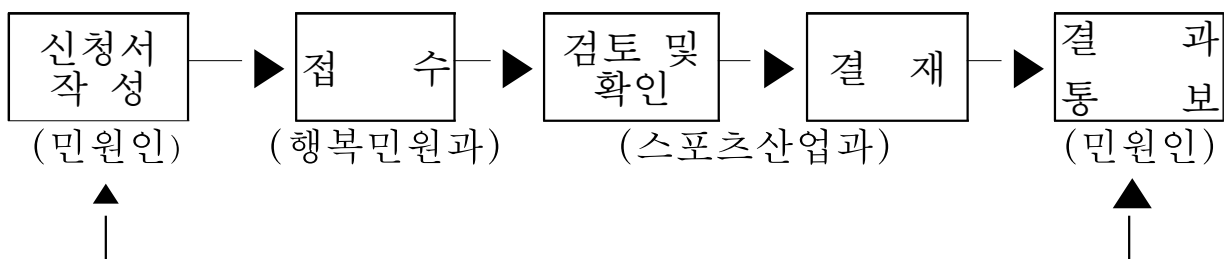
5. 수 수 료 : 없음.

6. 구비서류 : 신청서,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

7. 처리기간 및 제출처

제 출 처	처리기간	처리부서	경유·협의부서	비 고
장흥군	즉시	스포츠산업과	-	

8. 민원처리 흐름도



휴업(폐업) 통보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통보인	① 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영업소	상호	전화번호	
	소재지		
	② 업종		
신고번호		신고일자	년 월 일
휴업기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	일까지(일)

③ 휴업(폐업)사유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통보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작성요령

-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휴업(폐업)하려는 자(법인의 경우 대표자)의 성명을 적으십시오.
- ②란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.
- ③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를 간단히 적으십시오.

유의 사항

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